

2020.10.16.~10.26./ 11일간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 사 결 과

안	심사결과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출일자 : 2020. 10. 8.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 일시 : 2020. 10. 19.(10:00) ~ 2020. 10. 20.(24:00)
 - 범위 : 군수 및 『장성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장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20. 10. 16.)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2020. 10. 12.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2019.11.21. ~ 2020.11.20.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감사기간 : 2020. 11. 20. ~ 12. 1.(9일간)
- 감사방법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20. 10. 16.)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0. 8.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보건지소 신규설치 및 명칭 정비와 평생교육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라 원활한 기구운영을 위하여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 보건지소 설치 및 명칭 정비**

-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추가 기입 및 정비(제8조 제3항 별표1)

보건지소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장성군보건소 장북보건지소	장성읍 미락단지길 22	장성읍 일원
장성군보건소 진원보건지소	진원면 덕주1길 11	진원면 일원
장성군보건소 남면보건지소	남면 못재로 101	남 면 일원
장성군보건소 동화보건지소	동화면 수연로 7	동화면 일원
장성군보건소 삼서보건지소	삼서면 해삼로 1115	삼서면 일원
장성군보건소 삼계보건지소	삼계면 영장로 1585	삼계면 일원
장성군보건소 서삼보건지소	서삼면 축령로 366	서삼면 일원
장성군보건소 북일보건지소	북일면 신흥로 390	북일면 일원
장성군보건소 북이보건지소	북이면 백양로 32	북이면 일원
장성군보건소 북하보건지소	북하면 백양로 894	북하면 일원

○ 평생교육센터 사무실 이전

- 평생교육센터 위치 변경(제20조 제2항 별표2)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평생교육센터	(이전)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93 (변경)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장성군 일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출일자 : 2020.10. 8.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

○ 기금의 계정 구분 (안 제2조)

-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통합계정]

- 재원 : 다른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이자 수입, 수입금 등
- 용도 : 다른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이자 상환, 기타 경비 등

[재정안정화계정]

- ◆ 재원 :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 ◆ 용도
 -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해당 연도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재해의 발생,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기금이 필요한 경우

※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 중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기금 계좌 설치 및 이자율 산정(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
-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대행
-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규칙제정 및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0. 8..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4.28.)에 따라 장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제3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 예산과정으로 확대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주민의 범위를 한정 열거에서 모두 허용으로 확대(안 제2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임 규정 신설(안 제12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회에 한하여 연임 규정 신설
 - 기타 문구 수정 및 조문 정리(안제10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2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0. 8.
- 제안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안이유
 - 조례 시행('18. 10월)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전입장려 지원으로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인구늘리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전입장려금 지급 수단 변경(별표)
 - (현행) 현금 / 현금 또는 상품권
 - (개정) 장성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 전입장려금 지급액 균등화(별표)
 - (현행) 전입주민(학생) 10만원/인, 전입장병·기업체임직원 15만원/인
 - (개정) 전입장려금 10만원/인
 - 전입장려금 지급 한도 폐지(별표)
 - (현행) 3인 이상 전입 시 30만원 한도
 - (개정) 한도 규정 삭제
 - 전입장려금 신청 요건 거주기간 규정 폐지(별표)
 - (현행)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개정) 거주기간 규정 삭제
 - 지원 대상 규정 보완 및 추가(제4조)
 - (현행) 전입지원장려금 등의 지급
 - (개정) 지원 대상 상세 구분 보완 및 추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0. 10. 8.
- 제안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추가 (안 제1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제출일자 : 2020. 10. 8.
- 제안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단위 : m², 천원)

구 분		필지수 / 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1필지 / 1동	6,744	7,000,000	
취득	토지매입	1필지	5,256	3,200,000	군 비 3,200,000
	건물신축	1동	1,488	3,800,000	국 비 500,000 도·군비 3,300,000

- 의결결과 : 원안가결